

신고의무자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노숙인복지법

노숙인 시설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외국인고용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복지시설·
수용시설·보호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존재하지만, 가려진 위협 인신매매
인신매매 방지 안내



신고 112

(경찰, 24시간)



상담 1600-8248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평일 10:00~17:00



인신매매 방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신매매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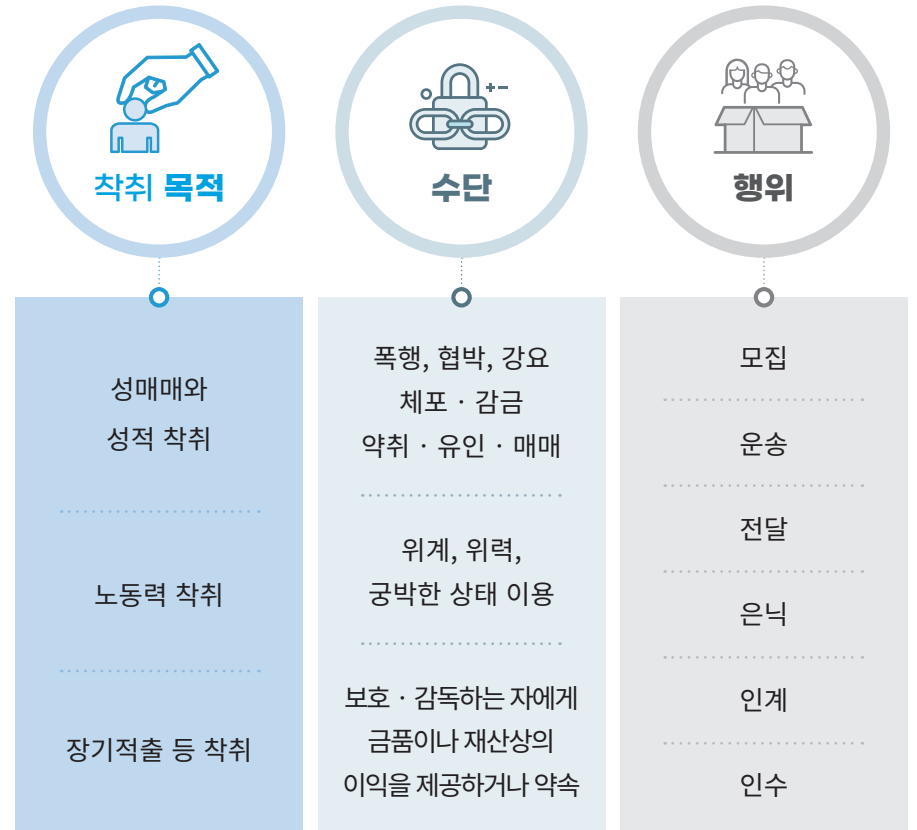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제1호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인신매매등 범죄

- 형법 제31장에 규정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이용한 성매매 등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매매·강요행위 등
- 근로기준법, 선원법, 장애인복지법 상의 강제근로 및 강제노동 행위 등

인신매매등의 3요소



인신매매등은 ① 목적 ② 수단 ③ 행위 세가지 요소에서 각각 1개 이상의 항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단,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수단요소가 없어도 ‘인신매매등’으로 봅니다.

또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각 항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피해자로 확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